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5 - 35 - 173호

안 건 명 판매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 ① [REDACTED]
[REDACTED]
[REDACTED]
- ② [REDACTED]
[REDACTED]
[REDACTED]
- ③ [REDACTED]
[REDACTED]
[REDACTED]
- ④ [REDACTED]
[REDACTED]
[REDACTED]
- ⑤ [REDACTED]
[REDACTED]
[REDACTED]
- ⑥ [REDACTED]
[REDACTED]
[REDACTED]

- ⑦ [REDACTED]
[REDACTED]
[REDACTED]
- ⑧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⑨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⑩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의결연월일 2015. 7. 9.

주 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i) 피심인① 내지 ⑨ : 각 과태료 1,000,000원

ii) 피심인⑩ : 과태료 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 조사대상 기간(15.2.24~5.29)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50개의 판매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행위사실

-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들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을 받고 그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영업을 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6월 18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단말기유통법은 제8조제3항에서 (i)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ii)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리점·판매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실조사 등)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들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을 하여 단말기유통법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III. 시정조치 명령

1.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들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판매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않음으로써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은 행위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5년 8월 00일

○○○(판매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3.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들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장에 게시한 공표문의 사진 제출 등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IV. 과태료 부과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1. 기준금액

단말기유통법 시행령(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금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차.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4항제6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2. 추가적 가중 및 감경

피심인①내지 ⑨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피심인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여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므로 50%를 감경한다.

3.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①내지 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하고, 피심인⑩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들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VI. 결론

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최 성 준



부위원장

허 원 제



위원

김 재 홍



위원

이 기 주



위원

고 삼 석

